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6.1.26(화) 14:00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양섭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3. 제안 이유

-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이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기존에 설치된 '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'가 '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'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.
- 또한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'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'⇒ '농어업·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'로 변경(안 제4조)
- 나. 「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⇒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안 제5조, 제7조)
- 다. 별지서식 중 '주민등록번호'를 '생년월일'로 수정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근거가 되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이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기존에 설치된 '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'가 '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'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